

동북아시아협정의 문제점으로는 이 협정들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점과, 참여국간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공통이해의 결여, 그리고 양자·다자협약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국가간의 환경문제와 관련 공동운명체라는 인식과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기구의 설립,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조사의 실시, 마지막으로 정부간 협정을 통한 지역협력 및 의결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10. 中國의 株式會社(股份有限公司)制度에 관한 研究 - 韓國株式會社法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해사법학과 강명재
지도교수 황정원

제1장 序 論

본 논문은 中國會社法上の 株式會社法과 韓國株式會社制度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類似點과 差異點, 問題點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中國株式會社法의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한 立法方向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의 中國 株式會社法 改正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提供하고자 하였다.

본 論文은 1993년 12월에 公布된 中國會社法中の 株式會社法을 중심으로 관련법률, 법규를 연구범위로 하였고, 比較法的 방법과 解釋學에 基礎하였다.

제2장 中國會社法의 제정과 그 構造

1978년부터 中國에서 對外開放政策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計劃經濟를 市場經濟體制로 轉換의 수요에 의하여 1993년 12월에 會社法이 제정되었다.

中國會社法은 全文이 230개 條文인데 총11장으로 나뉘어졌는데,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내용을 포괄하였다.

中國은 會社法을 商法典에 포함시키지 않고 民法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英國, 美國과 같은 單行法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會社法을 중심으로 國務院 및 關聯部門에서 發布한 많은 條例, 規章들로 會社法의 系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장 會社의 종류

中國會社法은 有限會社와 株式會社 2종류의 會社形態만을 인정하고 있다. 有限會社에서 一人會社의 형태인 「國有獨資公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中國에서 特殊形態로 존재하고 있는 會社들로는 「外商投資企業」, 商業銀行, 外國會社의 支社, 「股份合作公司」 등이 있다.

제4장 株式會社

中國會社法에서 규정한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中國은 株式會社의 설립에서는 免許主義, 有限會社설립에 있어서는 準則主義를 취하고 있다.
2. 中國에서는 會社設立에 있어서 總額引受制度를 취하고 會社의最低資本金을 人民幣1000만 원이라는 너무 큰 액수로 控制하기 때문에 國有企業이 아닌 민간기업은 株式會社를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中國에서 株式의 종류에는 國家株式, 外資株式같은 특수한 株式이 있다. 株式上場申請은 國務院 또는 國務院이 授權한 證券管理部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上場방법은 國務院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4. 中國會社法은 株主總會의 議事規則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總會에 출석한 株主들의 議決權의 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機關에 있어 「經理」라는 업무집행을 보조하는 常設機關을 두고 있고, 理事會의 權限과 「經理」의 權限을 법적으로 區分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監事會에 여러 가지 權限을 부여 하였지만은 그 權限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상의 규정이 미비하여 그 존재적 가치를 잃고 있다.
5. 中國에서는 社債의 발행주체를 株式會社뿐만 아니라 有限會社까지 확대하였다.
6. 企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株式會社의 財務諸表는 반드시 公開化 하여야 한다.
7. 定款의 변경은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를 거쳐 政府 關聯部門의 비준을 받아 登記를 마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8. 會社의 合併과 分割에 있어서 中國會社法에서는 會社種類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合併이나 分割의 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결함이다. 會社의 組織變更에 있어서 中國會社法은 有限會社가 株式會社로의 변경만을 인정하고 있다.
9. 中國에서 會社의 破産은 國有企業 성질의 會社가 破産할 경우에는 「中國破産法」을 적용하고 그 외의 회사가 破産할 경우에는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중의 企業法人 破産節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會社의 解散에 있어서 中國會社法은 解散判決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解散事由도 會社種類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清算人會를 구성함에 있어서 會社가 解散한 후 법정기간 내에 清算人會를 설립하지 않을 때에 債權者들의 신청에 의하여 人民法院이 關與하게 하였다.
10. 罰則에 있어서 主體가 다양하고 處罰이 엄격하며 會社犯罪에 대한 刑事責任을 強化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5장 結 論

結論的으로 改正方向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會社法典의 整備가 필요하다.

둘째, 會社의 種類를 增加하여야 한다.

셋째, 株式會社의 設立要件을 緩和하여야 한다.

넷째, 株主總會의 議事規則에 대한 規定을 補完하여야 한다.

다섯째, 少數株主들의 權利 保護를 強化하여야 한다.

여섯째, 機關에 대한 規定을 補完하여야 한다.